

2006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 조세부담완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

2006. 9

연구책임자 : 조선대학교 이 계 원
연구 원 : 호남대학교 이 화 진
연구 원 : 영남대학교 박 종 국
연구보조원 : 조선대학교 한 경 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연구결과를“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9

연구책임자 : 조선대학교 이 계 원
연 구 원 : 호남대학교 이 화 진
연 구 원 : 영남대학교 박 종 국
연구보조원 : 조선대학교 한 경 희

< 요약 >

2001년 이후 Paul O'Neill 전 미국 재무장관의 법인세 폐지 발언 이후 국내에서도 법인세 폐지문제가 거론되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및 이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찬성하는 자들은 ①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②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자원배분 및 기업 재무구조를 왜곡시키고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는 법인세율을 폐지 또는 인하하여야 하며 ③ 자본시장 자유화 및 국제조세경쟁이라는 치열한 국제환경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①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그리 크지 않으며 경제·사회여건에 따라 매우 불확실하며 ② 우리나라 기간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의 세수감소가 크고 상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높고 ③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므로 국제조세경쟁에서 크게 불리하지는 않으며 ④ 법인세율 인하는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는 대기업 및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므로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최근 반대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기회복에 쓴다면 그 효과는 세금 징수전과 같게 되나 감세를 통해 늘어난 가치분소득이 투자로 연결된다면 그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

우 오히려 세수가 줄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래퍼이론을 불황극복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측면도 존재한다. 결국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정책의 찬반양론에 대한 핵심은 감세정책이 기업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부담과 기업의 투자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 OLS로 분석하였다.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자 즉, 기업의 투자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통제된 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법인세 관련 정책수단들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2-SLS로 분석함으로써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여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1차적으로 단순 OLS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후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면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계획된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을 수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해석하면 감세정책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부른 재정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세수의 경우 예산대비 4조 3000억원이 부족했고, 올해도 4조 6000억원 가량 예산을 밑돌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금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이렇게 세수감소 추세는 분명한 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감세정책 → 투자 또는 소비증대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선불리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4
1.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론	4
2.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론	5
제 3 장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8
제 1 절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	8
제 2 절 주요국의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	17
제 3 절 시사점	22
제 4 장 우리나라 법인세제 변천과정	24
제 1 절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발전	24
1. 법인세법의 도입과 정착	24
2. 경제개발기의 법인세제	25
3.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제 발전	26
제 2 절 조세지원제도	27
제 3 절 법인세율의 변천	28
제 5 장 감세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38
제 1 절 감세정책의 논쟁에 대한 평가 및 연구방향 설정	38
제 2 절 선행연구의 개관	41
1. 외국에서의 선행연구	41
2.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	46
제 3 절 연구 설계	55
1. 기업의 투자	55
2. 조세부담	58

3. 연구모형	63
4. 변수간의 내생성 문제	64
5. 표본의 선택	67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69
1. 기술통계량	69
2. 변수 간 상관관계	71
3. 기업투자 및 조세혜택 추이	72
4. 기업투자와 조세혜택 사이의 OLS분석	73
5. 기업투자와 조세혜택 사이의 2-SLS분석	76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9
제 1 절 결론	79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시사점	80

< 표 차례 >

<표 1>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5년 기준)	5
<표 2> G-7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5년 기준)	7
<표 3> 미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5년 기준)	9
<표 4> 영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5년 기준)	10
<표 5> 프랑스 종량 최저한세 구조(2005년 기준)	11
<표 6> G-7국가의 법인세 및 지방세, 최고세율 비교	15
<표 7>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 지방세 현황	16
<표 8> 캐나다 연도별 법인세 인하 계획	18
<표 9> 일본의 법인세율 변화	19
<표 10> 벨기에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변화	20
<표 11>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변화추이	21
<표 12>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천	29
<표 13>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31
<표 14>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4년 기준)	32
<표 15> 총 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4년 기준)	33
<표 16> GDP 대비 조세부담률	34
<표 17>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36
<표 18>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	37
<표 19> 조세조정 Q의 국가별 추정치의 비교	45
<표 20> 표본의 선정과정	69
<표 21>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70
<표 2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71
<표 23> 기업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OLS분석	73
<표 24> 조세혜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OLS분석	75
<표 25> 기업투자자와 조세혜택 사이의 2-SLS분석	77

<그림 차례>

<그림 1> G-7 국가의 법인세 및 지방세	15
<그림 2> 아시아 주요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17
<그림 3> 조세혜택이 민간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39
<그림 4> 조세부담과 조세부담측정치 연구의 흐름	61
<그림 5> 연도별 기업투자 및 조세혜택 추이	72

제 1 장 서 론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게 하나, 장기적으로 세율인하는 기업의 투자촉진에 따른 경기상승과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감세정책은 투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반론으로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논지의 핵심은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그 감세효과가 크게 나타나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감세정책으로 인한 투자 및 근로 의욕고취는 그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¹⁾. 결국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정책의 찬반양론에 대한 핵심은 감세정책이 기업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감세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정책의 변화가 자본비용 또는 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계

1) 감세와 재정지출의 효과 비교

구분	감세	재정지출확대
경기부양효과	<중장기적·간접적> · 근로 투자의욕 고취 · 경기부양효과 ·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의문시 됨	<직접적·단기적> · SOC 등 직접투자로 수요증가 · 국채발생시 민간투자위축 및 금리인상
재정건전성	<세입기반잠식>	<세입기반유지>
소득재분배효과	· 고소득층에 효과가 크게 나타나 빈부격차가 심화됨	· 서민층에 대한 지출의 확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큼

자료 : 재정경제부(2005)

산하는 일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기업투자행태에 관한 실증분석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인세 관련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²⁾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인세 관련 정책수단들이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얼마나 유효한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해 왔고 또 이러한 정책의 채택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감세정책과 관련한 대표적 연구주제인 법인세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연구는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와 GDP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실제 우리나라 기업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상의 유인제도(Tax Incentives)가 제공되어 왔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현실적으로 기업투자로 이어졌는지 또한 어느 정도 투자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박기백(2004), 곽태원 등(2005), 권순창 등(2006)의 연구 등이 기업의 투자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조세부담과 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법인세 관련 연구들은 주로 OECD국가들을 비교하여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에서도 시계열 거시변수들을 이용하여 OGE 모형이나 부분 균형적 접근으로 투자와 법인세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신고전파 투자모형에 입각한 분석은 실증연구를 통해 자본관련 세율 인하가 노동관련 세율 인하보다 경제성장률 증대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자본관련세율 인하가 장기균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0.0076 ~ 0.063%p의 영향을 미친다고

2) 조세를 조정하지 않은 q투자모형 추정결과와 기존의 투자모형 추정결과에 대한 서베이는 이병기(2000) 참조

보고 있다. 김진수 등(2003)은 OECD 패널자료와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설비투자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 OLS로 분석하였다.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자 즉, 기업의 투자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통제한 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최근의 논쟁들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각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를,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제5장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감세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제6장에서 결론 및 정책시사점을 기술한다.

제 2 장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³⁾

본 장에서는 감세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조세혜택수단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논쟁을 개관한다.

1.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론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인세 폐지는 근본적인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의 일환으로서 주장되는 반면, 법인세율 인하는 주로 투자 및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주장된다. 그러나 법인세 폐지는 결국 법인세율을 영(零)으로 인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주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논거를 갖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주장은 주로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 처해 있을 때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외환위기 당시에 못지않을 정도로 체감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 재계, 학계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법인세가 기업의 순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축소시킨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의 관점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

3)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법인세율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일부 인용하였음. pp.27-33.

또한, 인용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최근 2005년도까지 update를 실시하였음.

업이 외국기업에 비해서 자기자본에 대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다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태여서 외국의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리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⁴⁾.

< 표 1 >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5년 기준)
(단위:%)

구 분	한 국	중 국	홍 콩	싱가포르	대 만	말레이시아
법 인 세 율	25	30	17.5	20	25	28
지방세 포 합	27.5	33	17.5	20	25	28

자료: 각국 인터넷, 2005년 기준

2.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론

법인세율 인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은 대체로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법인세율의 국제간 비교,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문제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살펴보자.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세율만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감가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투자를 저해

4) 그 밖에도 법인세는 기업가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Lee and Gordon(2003) 참조.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기업들이 투자 증대보다는 내부유보에 치중하는 경우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율 인하로 인하여 기업들이 추가적인 세후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재투자하게 된다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2001년에 들어와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Friedman and Lav(2001)는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적인 투자촉진 정책으로 적절한 것도 아니며, 반드시 투자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반박하였다. 그들은 법인세율 인하로 확보된 자금이 신규투자에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들었다. 또한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1년 6월 말 기준으로 6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지만, 감세정책의 경우 정책 입안에서 시행 또는 효과 발생시까지의 시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현재와 같이 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은 상황에서는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자칫 경기조절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수요창출 효과가 확실하고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재정지출 확대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미국(35%)이나 프랑스(33.3%) 등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포함하더라도 여타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많아 법인의 실제 조세부담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요 자본수출국들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해 거주지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은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이들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세수기반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 살펴본다⁵⁾. 법인세는 세수규모로 볼 때 국제세 중 점유비가 21%에 달하는 기간세목으로서 세수감소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자재정하에서의 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적자재정하에서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 민간 소비나 투자를 그만큼 축소하게 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수반하게 되어 감세정책의 주요 목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 표 2 > G-7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5년 기준)
(단위:%)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법 인 세 율	25.0	35.0	30	33.33	25	30.0	21.0	33
지방세 포 함	27.5	39.3	30	35.0	38.9	39.54	36.1	33

자료: <http://www.oecd.org>

5) 미국에서도 2001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Friedman and Lav(2001)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경기부양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2001년 한 해 동안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소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의 중앙정부 재정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제 3 장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⁶⁾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그 타당성에 대한 주요 논점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장에서는 선진국에서부터 아시아 지역의 경쟁국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인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 1 절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

1. 미 국

미국의 경우 연방 내국세법과 재무부 기본통칙에 의해 미국 내에 설립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모두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자신의 전 세계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의 사업과 관계된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년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 구조는 <표 3>에서와 같이 과세소득구간에 따른 8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과세소득구간에 적용하는 법인세의 세율은 35%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방법인세 외에도 대부분의 주정부마다 별도의 세율을 정하여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⁷⁾. 2005년 현재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미시간(Michigan)주로서

6) 김진수 등(2003)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법인세율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인용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최근 2005년도까지 update하였음.

7)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Wyoming 등 5개주다.

1.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이오와(Iowa)주는 가장 높은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표 3 > 미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5년 기준)

(단위 : 달러, %)

과세소득	세율
50,000 이하	15
50,001 ~ 75,000	25
75,001 ~ 100,000	34
100,001 ~ 335,000	39
335,001 ~ 10,000,000	34
10,000,001 ~ 15,000,000	35
15,000,001 ~ 18,333,333	38
18,333,333 초과	35

한편 미국은 상당한 소득을 가진 법인들이 면세, 세액공제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감면 항목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대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체 최저한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체 최저한세는 다음 해의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계속해서 이월이 가능하다. 대체 최저한세의 계산은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출발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조세혜택항목을 가산하고 최저한의 개념상 재계산되어야 할 소득, 공제사항, 손실항목 등을 가감 조정한 다음 결손금을 차감하여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금액이 잠정 최저한세(tentative minimum tax: TMT)가 되며, 잠정 최저한세가 정규

법인세액을 초과할 경우 잠정최저한세가 그 법인의 세 부담이 되고 초과하지 않을 경우 최저한세로 인한 부담은 없게 된다.

2. 영 국

영국은 2001 회계연도까지 10~30%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의 법인세 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2002 회계연도부터 1만 파운드 이하의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1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4단계 소득구간별로 과세하는 누진세율 구조의 법인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세소득구간 및 세율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charge)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 표 4 > 영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5년 기준)

(단위 : 파운드, %)

과세소득	세율
10,000 이하	0
10,001 ~ 50,000	23.75
50,001 ~ 300,000	29
300,001 ~ 1,500,000	32.75
1,500,000 초과	30

3. 프 랑 스

프랑스는 일반적인 OECD 회원국들과는 달리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의 영업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영업소득과 이에 귀속되는 손금은 과세소득 산

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05년 현재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33.33%의 단일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에 대한 3%의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34.33%이다.

한편 프랑스는 75% 이상의 지분이 개인주주에 의해 소유되고 연간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38,12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연간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3%의 부가세 외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액의 3.3%에 해당하는 법인이익 사회세(social surcharge)가 부과되므로 대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35.46%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법인의 연간 총 거래액에 따른 종량 최저한세(annual minimum lump-sum tax)를 적용하고 있는데, 총 거래액에 따른 최저한세액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 표 5 > 프랑스의 종량 최저한세 구조(2005년 기준)

(단위 : 유로)

총 거래액	최저한세액
150,000 이하	750
150,000 ~ 300,000	1,125
300,000 ~ 750,000	1,575
750,000 ~ 1,500,000	2,175
1,500,000 ~ 7,500,000	3,750
7,500,000 ~ 15,000,000	15,000
15,000,000 ~ 75,000,000	18,750
75,000,000 초과	30,000

4. 독 일

독일의 경우 2000년도까지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단일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2001/2002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25%로 대폭 낮추었으며, 이러한 법인세율에 대해 추가적으로 5.5%의 공동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최종적인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26.38%가 된다. 그러나 「Flood Victims Solidarity Law」의 개정으로 인해 200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25%에서 26.5%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2003년도의 경우 5.5%의 공동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27.96%가 된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다시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여기에 5.5%의 공동부가세를 포함하여 26.375%가 된다.

한편 독일은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지방정부가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세율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19.6%에 달한다. 영업세는 기본 연방세율과 승수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선 과세대상 법인소득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기본납세금액을 결정하고 이 기본납세금액에다 승수를 곱하여 실제 영업세액을 산출한다. 승수는 각 지역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며, 최고 수준은 490%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를 보면 베를린은 410%, 프랑크푸르트는 490%, 함부르크는 470%, 뮌헨은 490%이다. 영업세는 법인세액 산출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액을 감안한 최종 법인세율은 평균 38.6%에 이른다.

5. 일 본

일본의 현행 법인세율은 30%이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엔 이하의 소득에 대해 2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

에서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지방세인 사업세가 9.6%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세액의 17.3%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인 사업세는 법인세액 계산 시 손금 산입되므로 지방세(법인사업세+주민세)를 포함한 최종 세율은 40.87%이다⁸⁾.

6. 캐나다

캐나다는 2000년까지 28%의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왔으며⁹⁾ 법인세율에 대한 4%의 부가세(surtax)를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부가세를 포함한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29.12%에 달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0년 이후부터 법인세율 인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일반 연방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2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연방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는 여전히 2000년 기준 연방법인세율에 대해 4%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게 되면 2003년 현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4.12%에 달하게 된다. 한편 캐나다는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3%로 낮추는 것과 아울러 과세소득 20만~30만 캐나다달러(CAD)의

8) 일본의 법인소득에 대한 최종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① 우선 사업세를 부과하기 이전의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 ② 사업세를 손금산입한 후 소득 = $100 \div (1 + 0.096) = 91.24$
- ③ 법인세액 = $91.24 \times 30\% = 27.37$
- ④ 주민세액 = $27.37 \times (\text{도부 현민세 } 5\% + \text{시정 촌민세 } 12.3\%) = 4.74$
- ⑤ 사업세액 = $91.24 \times 9.6\% = 8.76$

따라서 최종 세율은 ③~⑤의 합인 40.87%가 된다.

자료: 稻垣光隆(2002).

9) 2000년의 경우 연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연방법인세율은 38%에 달하지만,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10%의 리베이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28%이다. 2003년의 경우에도 33%의 세율에서 10%의 리베이트를 적용하므로 법인세율은 23%가 된다.

소규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또한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세율로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평균 세율은 12.5%에 달한다. 따라서 각 주마다 연방정부 법인세, 부가세 및 지방정부 법인세를 포함한 총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38.16~46.6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 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퀘벡(Quebec)주로 38.16%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의 경우 42.62%, 온타리오(Ontario)주의 최종 세율은 46.62%이다.

7.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2001년까지는 37%에 달하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2002년도에 36%, 2003년도에 34%, 2004년도에 33%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또한 이탈리아는 이와 같은 연방정부 법인세 이외에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법인세의 표준세율은 4.25%이나 각 지방정부는 1%포인트 내에서 세율을 증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 G-7 국가들의 연방정부 AC 지방 정부 법인세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1]에서는 이들 G-7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법인세 최고세율만을 비교하였을 때는 캐나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다. 미국의 법인세율이 과세소득의 35%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34%, 33.33%로 높은 편이다.

한편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를 포함할 경우의 최종적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G-7 국가의 어느 나라보다도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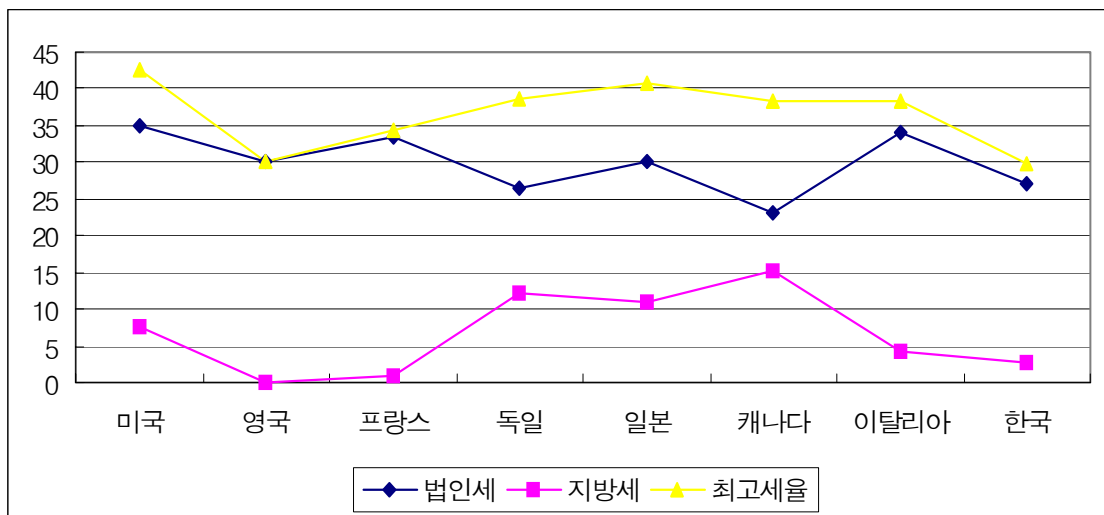
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이 40.87%로 두 번째로 높다.

< 표 6 > G-7 국가의 법인세 및 지방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법인세	35	30	33.33	26.5	30	23	34	27
지방세	7.5	0	1	12.1	10.87	15.16	4.25	2.7
최고세율	42.5	30	34.33	38.6	40.87	38.16	38.25	29.7

[그림 1] G-7 국가의 법인세 및 지방세



8. 아시아 주요국

중국의 법인세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33%이다. 이 중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로서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며 지방세까지 포함한 최종 세율이 33%인 것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1997~98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1998~99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6%로 인하하였다가 최근의 범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달리 2003~04회계연도부터는 17.5%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점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 현재 20%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법인세 제도와는 다르게 기업, 개인사업자, 조합 및 여러 형태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과세구간 및 세율구조를 보면 우선 연간 과세소득이 5만NT달러 이하인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10만NT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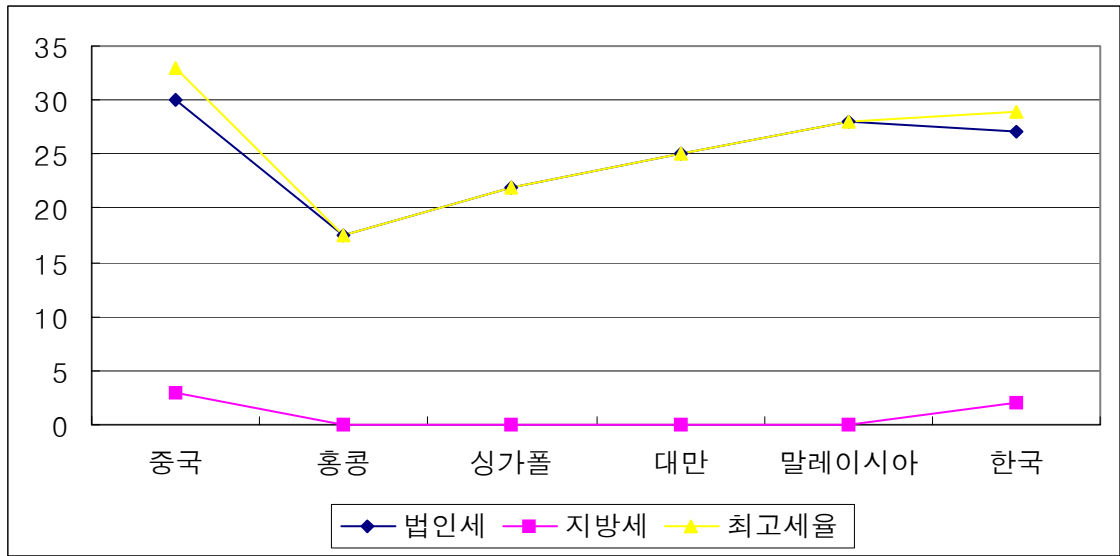
[그림 2]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과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 기준으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는 최종세율로는 중국 다음으로 높다.

< 표 7 >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 지방세 현황

(단위 : %)

구 분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법인세	30	17.5	22	25	28	27
지방세	3	0	0	0	0	2
최고세율	33	17.5	22	25	28	29

[그림 2] 아시아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중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3%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며, 대만은 이보다 낮은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법인세율 33%는 주로 내국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대부분 15~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제자본 유치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세율을 비교한다면 33%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15~24%의 세율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홍콩 및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5%, 22%로 아시아 주요국 중 낮은 편이다.

제 2 절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동향

1. G-7 국가

미국의 경우 2001년 폴 오닐 장관의 법인세 폐지검토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구조는 1986년 세제개편 이후 2005년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35%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는 2000년까지 38%의 높은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캐나다 내에서의 법인소득에 대해 10%의 리베이트(rebate)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28%로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감안할 때 2003년도 기준 일반 연방법인세율은 23%로 2000년에 비해 5% 낮아졌으며 2004년에는 21%로 낮아졌다.

또한 2004년에 21%의 일반 연방 법인세율 적용에 앞서 2001년 1월부터 20만~30만 캐나다 달러(CAD)의 소규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1%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표 8 > 캐나다의 연도별 법인세 인하 계획

(단위 : %)

연도	일반 연방 법인세율
2000	28
2001	27
2002	25
2003	23
2004~현재	21

자료: IBRD, European Tax Handbook 2005

독일의 경우 1998년까지 45%의 높은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독일은 1999년부터 법인세율을 40%로 낮추었으며, 2001년부터는 기존의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경감한 25%의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Flood Victims Solidarity Law」의 개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25%에서 26.5%로 1.5%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한 바 있다.

한편 독일의 이와 같은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특별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30%인데, 2000년 이후 이와 같은 세율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법인세율에 대한 부가세나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율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탈리아는 2001년도에 37%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2년도에는 36%, 2003년도는 34%로 인하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다시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1984년에 무려 42%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단계적인 인하조치에 따라 1988년에 37.5%로 낮아졌으며, 1989년에는 다시 34.5%로 낮아졌다. 이후 1990년대에도 34.5%(경감세율 25%)의 법인세율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1998년 4월에 발표된 종합경제대책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항구적 감세조치로 법인세율을 30%(경감세율 22%)로 인하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표 9 > 일본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 %)

연도	1984 ~	1987 ~	1988 ~	1989 ~	1999 ~
법인세율	42	40	37.5	34.5	30

자료: 일본 재무성(<http://mof.go.jp>)

2. 기타 OECD 국가

기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는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인

세율 인하 움직임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1999년 재정법(Finance Act 1999)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하던 표준 법인세율을 2001년부터 20%로 경감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이를 다시 16%로 경감하고 2003년 현재 12.5%로 대폭 경감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아일랜드는 제조업을 통해서 획득된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표 10 > 벨기에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변화

(단위 : BEF 또는 EUR, %)

2000		2001	
과세소득(BEF)	세율	과세소득(BEF)	세율
~ 1,000,000	28	~ 1,000,000	28
1,000,001 ~ 3,600,000	36	1,000,001 ~ 3,600,000	36
3,600,001 ~ 13,000,000	41	3,600,001 ~ 13,000,000	41
2002		2003	
과세소득(EUR)	세율	과세소득(EUR)	세율
~ 25,000	28	~ 25,000	24.25
25,000 ~ 89,500	36	25,000 ~ 90,000	31
89,500 ~ 323,750	41	90,000 ~ 322,500	34.5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벨기에도 2003년 이후부터 급격한 법인세율 구조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벨기에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까지 법인세의 기준세율을 39%로 설정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경감하여 기준세율을 33%로 설정하는 한편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34.5%의 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인세율에는 국민생활의 긴축정책을 위한 3%의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므로 2003년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최종 세율은 각각 24.98%, 31.93%, 35.54%로 높아진다.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는 폴란드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폴란드는 1999년 34%였던 법인세율을 2004년에 22%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의 법인세율은 24%로 1999년에 비하면 무려 10%포인트나 낮아졌다.

3.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인하조치가 두드러진다. 싱가포르는 1986년까지 40%라는 매우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세율인하를 단행하여 왔다. 1987년에 법인세율을 33%로 낮춘 이후 단계적인 인하 과정을 거쳐 1993년에는 법인세율을 30%로, 1997년에는 26%로 인하하였다. 그 이후 몇 년간 26%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싱가포르는 다시 2001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현재 법인세율은 22%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까지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 표 11 >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1990	1991	1993	1994	1997	2001	2002	2003	2005
법인 세율	32	31	30	27	26	25.5	24.5	22	20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http://iras.gov.sg>)

그러나 대만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각각 25% 및 28%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30%(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33%)의 법인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97~98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0.5%포인트 낮추어 2002~03회계연도까지 16%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3~04회계연도부터는 최근의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반대로 법인세율을 17.5%로 1.5%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 3 절 시사점

G-7 국가 등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국가의 법인세부담은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에 비해서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국의 법인세율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 가운데서 두 개의 뚜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법인세율 30%를 하한으로 지속적으로 세율인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이미 30% 수준에 근접한 영국(30%)과 프랑스(34.3%)는 최근에는 세율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명목세율이 40% 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으로 높았던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는 최근 명목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5% 이하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유효세율을 크게 낮추는 실정이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명목 법인세율이 33%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지역이나 투자업종에 따라 15~2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선도기업(pioneer enterprise)에 대해 과감한 조세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성격의 역외거래지역을 설정하여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분된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법인세율 인하 논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쟁국에 비해 세 부담을 낮게 설정하여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명목세율 인하 경쟁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명목세율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제도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한 유효세 부담을 변화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만약 조세지원제도가 크게 다른 국가들 사이에 명목세율을 수렴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경제 환경이 유사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다.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세 부담의 격차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대별되는 경제 환경의 격차를 압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명목세율이 27.5%(지방세 포함)로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주변의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제자본 유치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군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국가군의 정책동향을 참조하여 우리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4 장 우리나라 법인세제 변천과정¹⁰⁾

법인세제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우선 개략적인 변천을 살펴본 후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발전과 역할

1. 법인세법의 도입과 정착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으로서 제정·공포된 것은 1949년 11월이다. 제정 당시의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을 과세의무자로 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35%의 세율로 부과하였다.

6·25 전쟁 후 1951년부터는 임시세제인 조세임시증감법 및 조세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세율을 비례세율에서 최저 25%, 최고 45%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하고, 1955년부터 조세특례법 등의 폐지로 평시(平時)세제로 환원하면서 법인세율도 일반법인은 35%, 특별법인은 30%의 비례세율구조로 환원했다. 또한 1961년부터는 중간예납 및 수시부과제도를 도입하고, 공개법인과 비영리법인은 17%, 비공개법인은 22%의 세율을 획기적으로 인하 적용하여 자본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10) 광태원·이병기·현진권(2005), “법인세제의 변화와 투자-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일부 인용.

2. 경제개발기의 법인세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1961년 말 국세 및 지방세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법인제도 전문 개정되어 일반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없이 2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공모·증자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 10%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공개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으며, 1963년에는 세율을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편했다.

1967년에 또 한 차례의 법인세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개정으로 현재의 법인세법 체계가 갖추어졌다. 1967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구조를 3단계로 구분하고 일반법인과 공개법인에 차등을 두었으며, ‘법령에 의한 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한편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90일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조사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공개 촉진과 자본시장 육성·지원을 강화했다.

1977년부터는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개법인의 세율을 대주주비율이 35% 이하인 법인과 35% 초과 법인으로 구분·차등을 두었고,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한도액의 부분적인 확대를 통해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범위확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신설 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때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제도도 신설되었다.

이상과 같이 1960~1970년대의 법인세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조치들을 도입·확대하는 한편, 성실신고와 자진납부를 위한 녹색신고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성실

신고와 자진납부의 유도,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3.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제 발전

1979년 12월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법인과세제도는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

1982년에는 법인간의 세 부담 공평을 위해서 조세감면 축소가 이루어지고 25%~40%였던 법인세율이 22~38%로 인하되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조세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조세감면규제법으로 흡수했으며, 이전까지 전액 비과세하던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5%의 법인세를 과세했다. 1983년에는 다시 법인세율이 20~30%로 대폭 인하되고 공개·비공개법인 사이의 세율 차이를 없애는 대신 비상장대법인에 대해 33%의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1991년에는 일반법인·비상장대법인·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던 법인세율을 일반법인 하나로 통합하고,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계급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로 인상했으나 방위세의 폐지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줄어들었다. 또한 1994년에는 각 과세표준 계급별로 세율이 2%씩 인하되었으며, 1995년에는 다시 과세표준 1억원 초과와 2%의 세율인하로 법인세율이 30%가 되었다. 1996년부터는 각각 2% 포인트씩 인하하여 16~28%가 되었고 1999년부터는 공공법인이 폐지되고 일반법인과 함께 모든 과세대상 법인으로 통합되는 대신 새로이 조합법인에 대해 12%의 저율과세가 적용되었다. 나아가 2002년에는 모든 과세대상법인에 대해 1%포인트씩 인하하여 15~27%가 적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하여 현재 13~25%의 2단계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 2 절 조세지원제도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가 조세지원제도이다. 조세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의 형평성 등과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 조세지원제도는 이러한 조세의 징수를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세지원제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경제·사회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해지는 일종의 유인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세지원을 각 세법에서 규정, 운영하던 것을 1965년 12월 30일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해 조세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세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조세지원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직접지원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감면하거나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 부담의 직접적 경감이 이루어지므로 그 효과와 절차가 간편하다. 반면 간접지원의 경우는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이다. 즉 간접지원은 일시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세액을 다시 부담하게 되므로 일종의 자금지원 성격을 가진 조세지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지원은 과세상의 불공평을 야기하는 직접지원에 비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좀 더 우수하고 세수감소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그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직접지원으로는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등이 있으며, 간접지원으로는 준비금과 특별상각 등이 있다.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조세지원제도는 각 세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운영되었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지원제도가 정책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수요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무질서한 조세감면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세지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1965년 12월 30일 모든 조세지원을 통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정되어 1966년 1월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세감면규제법은 처음에는 적용시한이 없는 영구법(永久法)이었으나, 그 이후 한시법(限時法)으로 바뀌어 1993년 세법 개정 시 적용시한을 다시 1998년 12월 31일로 연장·적용하였다.

제 3 절 법인세율의 변천

법인세율의 차등적용도 조세지원정책의 한 가지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천은 아래 <표 12>에 정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세율이 높았던 기간은 1960년대 후반의 45%였으나 방위세 등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1970년대 후반부에 더 높은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5년부터는 최고 한계세율이 25%로 낮아졌다.

세율 구조를 보면 5단계 누진세율까지 적용된 적이 있지만 1970년대 중반 이래로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구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961~1982년 기간 동안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차등 과세해 기업의 공개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1969~1998년 기간 동안에는 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공공법인 자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

< 표 12 >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천

연도	일반법인	특별법인	연도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1950	35%	20%	1975	20~40% 3단계 누진	20~27% 2단계 누진	20~27% 2단계 누진
1951	25~45% 5단계 누진	15~35% 5단계 누진	1976	20~40% 2단계	20~27% 2단계	20(학교법인15)~ 27% 2단계
1952	15~75% 8단계 누진	상동	1977	20~40% 2단계	20(25)~27(33)% 2단계, ()내는 대주주지분 35% 초과법인	20(학교법인15)~ 27% 2단계
1953	35~70% 8단계누진	20~55% 8단계 누진	1979	20~40% 2단계	20(25)~32(35)% 2단계, ()내는 대주주지분 35% 초과법인	20(학교법인15)~ 27% 2단계
	일반법인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1981	25~40% 2단계	25~33% 2단계(대주주지분 35% 이하)	20~27% 2단계
1955	35%	30%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57	32%	27%	1982	22~38% 2단계	22~33% 2단계(대주주지분 35% 이하)	20~27% 2단계 5%
	일반법인	동족법인		일반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59	30%	22%	1983	20~30% 2단계(비상장대법 인 33%)	27%	5%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1989	상동	상동	10~15% 2단계
1961	22%	17%		일반법인	공공법인	
1962	20%	10%	1991	20~34% 2단계	17~25% 2단계	
1963	20~25% 2단계	비공개법인의 1/2	1994	18~32% 2단계	18~25% 2단계	
1964	25~30% 2단계		1995	18~30% 2단계	18~25% 2단계	
1966	20~35% 3단계		1996	16~28% 2단계	16~25% 2단계	
1968	25~45% 3단계	20~35% 3단계		모든 과세대상법인	조합법인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1999	16~28% 2단계	12%
1969	25~45% 3단계	15~25% 3단계	20~35% 3단계	2002	15~27% 2단계	12%
1972	20~40% 3단계	16~27% 3단계	20~35% 3단계	2005	13~25% 2단계	12%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화했다. 1999년부터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12%의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 법인세 세수 현황¹¹⁾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이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표 13 >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법인세	93,654 (12.4)	178,784 (19.2)	169,751 (17.7)	192,432 (18.5)	256,327 (22.4)	246,784 (21.0)
소득세	158,546 (21.0)	175,089 (18.8)	186,630 (19.5)	191,605 (18.4)	207,873 (18.1)	234,340 (19.9)
부가가치세	203,690 (26.9)	232,120 (25.0)	258,347 (27.0)	316,088 (30.4)	334,470 (29.2)	345,718 (29.3)
상속증여세	9,012 (1.2)	9,889 (1.1)	9,484 (1.0)	8,561 (0.8)	13,150 (1.1)	17,082 (1.5)
기타	291,678 (38.6)	333,465 (35.9)	333,716 (34.8)	330,992 (31.8)	334,822 (29.2)	334,033 (28.4)
총 국세	756,580 (100.0)	929,347 (100.0)	957,928 (100.0)	1,039,678 (100.0)	1,146,642 (100.0)	1,177,957 (100.0)

주: ()안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11) 김진수·박형수·안중석(2003)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법인세율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일부 인용.

또한, 인용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최근 2005년도까지 update를 실시하였음.

2004년 법인세 과세표준 계급별로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4>와 같다. 우선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결손법인이 10만 6,617개로 전체의 33.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은 16만 1,873개로 전체의 51.1%를 기록하였다. 즉, 전체 법인의 과반수 정도가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한편 이들 법인이 부담한 세액은 5,197억원으로 총 세액의 2.4%에 불과하며, 법인당 평균 법인세 부담액은 321만원이었다.

< 표 14 >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4년 기준)
(단위 : 개, 억원, %)

과세표준 구간	세율	법인 수	과세표준	총세액
결손	-	106,617 (33.7)	-	81 (0.04)
1천만원 이하	15	71,152 (22.5)	1,588 (0.2)	235 (0.1)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	90,721 (28.6)	37,149 (3.6)	4,962 (2.3)
소계		268,490 (84.8)	38,737 (3.8)	5,197 (2.4)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7	41,373 (13.1)	112,115 (11)	20,220 (9.5)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7	6,060 (1.9)	168,511 (16.6)	33,505 (15.7)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7	665 (0.2)	136,902 (13.4)	31,512 (14.8)
500억원 초과	27	189 (0.06)	561,788 (55.2)	122,986 (57.6)
소계		48,287 (15.2)	979,316 (96.2)	208,223 (97.5)
합계		316,777 (100)	1,018,053 (100)	213,501 (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27%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억원이상의 법인은 4만 8,287개로 전체의 15.2%를 차지하였다. 반면 이들 법인이 부담한 총 세액은 20조 8,223억원으로서 전체의 97.5%에 달하며, 법인 당 평균 4억 3,312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0.06%에 불과한 189개 법인이 총 세액의 57.6%인 12조 2,986억원을 부담하여 법인 당 평균 법인세 부담액은 650.6억원에 달하였다.

총 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1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는 30만 5,062개로 전체 법인 수의 대부분인 96.3%를 차지하는 반면, 총 세액은 1조 8,28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는 11,502개로 전체 법인 수의 3.67%를 차지하였으며, 세액은 7조 62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32.8%를 차지하였다.

< 표 15 > 총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4년 기준)

(단위: 개, 억원, %)

세액규모	법인 수	과세표준	총세액
1억원 미만	305,062 (96.3)	121,347 (11.9)	18,282 (8.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481 (2.7)	92,719 (9.1)	18,053 (8.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441 (0.5)	48,465 (4.8)	10,106 (4.7)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373 (0.4)	124,777 (12.3)	28,092 (13)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7 (0.07)	61,468 (6)	14,371 (6.7)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67 (0.05)	145,828 (14.3)	33,762 (15.7)
500억원 이상	46 (0.01)	423,450 (41.6)	92,836 (43.1)
합계	316,777 (100)	1,018,054 (100)	215,502 (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1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는 167개로 전체 법인 수의 0.05%를 차지하였으며, 세액은 3조 3,76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15.7%를 차지하였다. 끝으로 5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는 46개로 전체 법인 수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액은 9조 2,836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43.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법인세의 세수 측면에서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인세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수 측면에서 법인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법인세의 폐지 또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법인세는 극히 일부분의 기업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세목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0.13%에 불과한 420개의 법인이 총세액의 68.9%인 14조 969억원을 부담하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를 기준으로 볼 때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00년에 19.7%, 2001년에 19.7%, 그리고 2002년에는 19.8%, 2003년 20.4%, 2004년 19.5%를 기록하였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2000년에 3.1%에서 그리고 2001년에는 2.7%로 하락하였다가 2003년 3.5%, 2004년 3.2%로 증가하여 GDP 대비 조세부담률과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표 16 >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잠정
법인세	178,784 (3.1)	169,751 (2.7)	192,432 (2.8)	256,327 (3.5)	246,784 (3.2)
국세	929,347 (16.1)	957,928 (15.4)	1,039,678 (15.2)	1,146,642 (15.8)	1,177,957 (15.1)
지방세	206,006 (3.6)	266,649 (4.3)	315,257 (4.6)	331,329 (4.6)	342,017 (4.4)
계	1,135,353 (19.6)	1,224,577 (19.7)	1,354,935 (19.8)	1,477,971 (20.4)	1,519,974 (19.5)
명목 GDP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7,784,446

주: () 안은 명목 GDP 대비 비율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표 17>을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를 기준으로 볼 때 2003년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0.4%로 OECD 30개국 조세부담률의 평균인 26.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서 15.8%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볼 때 2003년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9%로 OECD 30개국 법인세부담률의 평균인 3.4%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서 8.1%였으며,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로서 1.3%였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과 독일의 법인세부담률은 각각 2.1%와 1.3%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세법이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기업주 단계에서 과세하는 통과기업(pass-through entity)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7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

	1990	1995	2000	2002	2003
캐나다	31.5	30.6	30.8	28.9	28.6
멕시코	15.0	13.9	15.4	14.8	15.8
미국	20.5	20.9	23.0	19.4	18.8
호주	29.3	29.8	32.1	31.4	31.6
일본	21.4	17.7	17.2	15.9	15.6
한국	17.9	18.1	19.6	19.8	20.4
뉴질랜드	37.7	36.9	33.9	35.0	34.9
오스트리아	26.6	26.3	28.1	29.1	28.6
벨기에	28.8	30.1	31.5	31.6	31.0
체코공화국	-	22.0	20.1	20.7	21.3
덴마크	46.7	48.5	48.3	47.5	47.1
핀란드	33.0	31.8	35.9	33.6	32.8
프랑스	23.6	24.5	28.4	27.3	27.0
독일	22.3	22.7	22.7	21.1	21.1
그리스	20.5	21.9	26.4	24.4	22.8
헝가리	-	27.3	27.6	27.1	26.8
아이슬란드	30.8	29.5	36.3	35.3	36.4
아일랜드	28.5	28.1	27.9	24.4	25.3
이탈리아	26.1	28.2	30.8	30.0	30.4
룩셈부르크	29.8	31.1	30.2	29.9	29.8
네덜란드	26.9	24.4	25.2	25.3	24.7
노르웨이	30.6	31.5	34.2	33.8	33.5
폴란드	-	25.8	23.0	23.3	20.0
포르투갈	21.3	23.5	25.5	25.2	25.3
슬로바키아	-	-	20.6	19.5	18.7
스페인	20.8	20.3	22.6	22.6	22.5
스웨덴	38.7	35.1	39.1	35.0	35.8
스위스	19.9	20.3	23.1	22.4	22.0
터키	16.1	19.8	26.3	24.9	25.9
영국	30.3	28.9	31.1	29.6	29.0
OECD 평균	26.7	26.5	27.9	27.0	26.8

주: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총세수의 명목 GDP 대비 비율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4, 2005.

< 표 18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

(단위 : %)

	1990	1995	2000	2002	2003
캐나다	2.5	2.9	4.4	3.4	3.5
멕시코	-	-	-	-	-
미국	2.4	2.9	2.6	1.7	2.1
호주	4.1	4.4	6.5	5.2	5.3
일본	6.5	4.2	3.6	3.1	3.3
한국	2.5	2.4	3.3	3.1	3.9
뉴질랜드	2.4	4.4	4.2	4.4	4.7
오스트리아	1.4	1.4	2.0	2.2	2.2
벨기에	2.4	2.8	3.6	3.5	3.4
체코공화국	-	4.6	3.5	4.4	4.6
덴마크	1.8	2.4	3.3	2.9	2.9
핀란드	2.0	2.3	6.0	4.3	3.5
프랑스	2.2	2.1	3.1	2.9	2.5
독일	1.7	1.0	1.8	1.0	1.3
그리스	1.6	2.0	4.6	3.7	3.3
헝가리	-	1.9	2.2	2.4	2.2
아이슬란드	0.9	1.0	1.5	1.1	1.5
아일랜드	1.7	2.8	3.8	3.8	3.8
이탈리아	3.9	3.6	2.9	3.2	2.9
룩셈부르크	6.5	7.5	7.2	8.4	7.9
네덜란드	3.2	3.1	4.2	3.5	2.9
노르웨이	3.7	3.8	9.0	8.2	8.1
폴란드	-	2.8	2.5	2.1	1.8
포르투갈	2.3	2.5	4.1	3.6	3.2
슬로바키아	-	-	2.9	2.7	2.8
스페인	2.8	1.7	3.1	3.2	3.1
스웨덴	1.7	2.8	4.0	2.4	2.5
스위스	2.0	1.8	2.8	2.7	2.5
터키	1.3	1.5	2.4	2.2	2.6
영국	3.6	2.8	3.6	2.9	2.8
OECD 평균	2.7	2.8	3.7	3.4	3.4

주: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는 법인세의 명목 GDP 대비 비율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4, 2005.

제 5 장 감세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제 1 절 감세정책의 논쟁에 대한 평가 및 연구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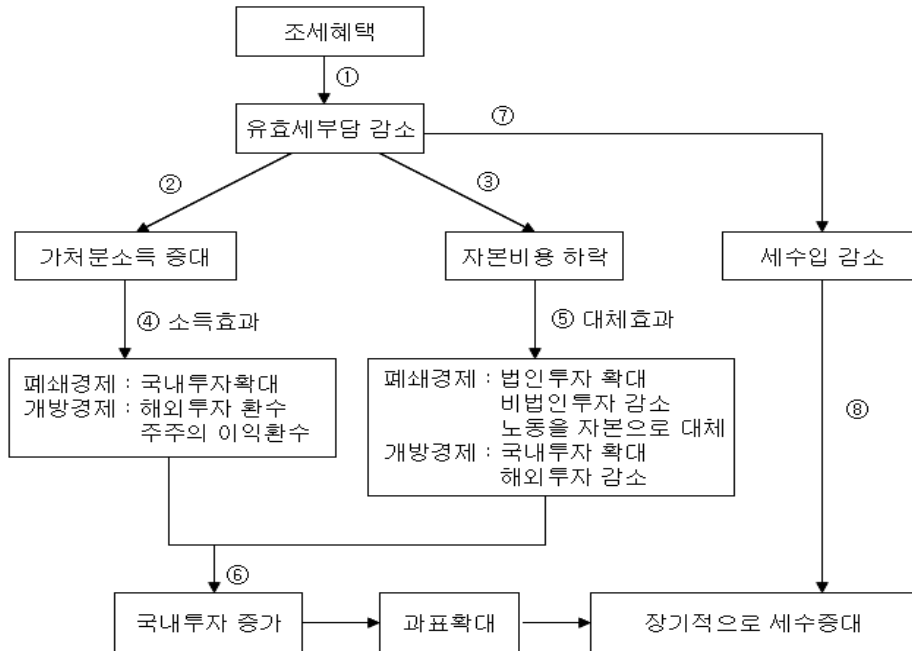
조세혜택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조세혜택은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의미하는 유효세 부담을 하락시킨다(①). 기업의 세 부담 감소는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의미하며(②), 폐쇄경제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증대되면 국내 저축과 투자가 증대된다(④).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투자여력(가처분소득)이 증대되면 투자자는 여유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할 경우 국내투자를 늘릴 경우 세전수익률의 하락을 유발하는 데 비해 세계로 눈을 돌릴 경우 세전수익률의 하락 없이도 다양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증대시켜 국내 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된 사회에서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¹²⁾.

감세정책으로 인한 유효세 부담 감소는 또한 자본비용을 하락시킨다(③). 여기서 자본비용의 하락이란 비 법인부문 대비 법인부문 자본비용의 하락, 노동비용 대비 자본비용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쇄경제에서는 비 법인부문에 투자되었던 자본이 법인부문으로 이동하며,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효과도 발생한다(⑤).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된 경제에서 한 소규모 국가의 법인부문 자본비용의 감소는 즉각적으로 그 부문에 대한 해외자본의 유입을 초래하며¹³⁾, 법인-비법인 부문간의 자본이동, 노동과 자본의 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12) Lee and Gordon(2003)에 의하면 법인세 정책이 기업가 활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13) 해외자본의 유입은 해외에 투자되었던 국내자본의 환입을 포함한다.

[그림 3] 조세혜택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자료 : 김진수 등(2003),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수정.

이 그림은 신고전학파의 투자모형을 매우 단순화하여 설명한 것으로 현실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현 상황에서 조세혜택의 효과가 유효세 부담 감소(①), 해외투자 대비 국내투자의 자본비용 감소(③)를 통해 국내투자 확대, 해외투자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투자가 증대 되면 매출이 확대되어 세수입이 증대되며,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입 증가분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경로에 비추어 볼 때 감세정책의 논

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조세혜택을 통해 자본비용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은 폐쇄경제에서 비법인부문과 노동에 비해 상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감세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두 번째 논쟁은 조세혜택이 자국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킬 경우, 자본비용 하락이 국내투자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자본비용 변화에 따른 한계적 투자의 변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에서는 당연히 자본비용의 상대적 하락이 국내투자의 증대를 유발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본비용과 투자의 관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치, 안보 그리고 국제투자의 경우 투자자 거주지의 과세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수요가 자본비용에 대해 비탄력적일 경우 법인세율을 인하하여도 투자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금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거나 주주에게 배당되어 다른 투자처(해외 또는 미래 투자)를 찾게 될 것이다.

제 2 절 선행연구의 개관

20세기 초부터 기업의 투자행태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가속도이론과 신고전파투자이론이 양대 산맥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법인세제도상 투자 유인이나 투자 억제요인 등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미시적 최적화 이론에 바탕을 둔 신고전파투자이론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인세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신고전파적 접근에 바탕을 둔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신고전파 투자모형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이론의 발전과 중요한 실증연구의 성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에서의 선행연구

Clark(1917)는 “기업의 투자는 산출량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가속도이론의 입장을 지지했음에 비해, Fisher(1930)는 한계투자 한 단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신고전파 투자이론의 입장을 보였다.

Jorgenson(1963)은 신고전학파적인 접근으로 투자모형을 정형화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없는 완전경쟁시장 모형에서 기업의 동태적인 이윤극대화 혹은 가치극대화 문제를 풀면 기업의 자본사용자비용을 나타내는 식을 구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이윤극대화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본수요의 표현을 얻을 수 있다.

Jorgenson 등의 접근은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을 받았다. 한 가지 비판은 그의 바람직한(소망스러운) 자본가스톡은 산출량과 자본비용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이 변수를 이용한 투자의 실증분석 결과는 자본비용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속도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며 자본사용자 비용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었다.¹⁴⁾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에서 소망자본스톡이 실제투자로 실현되는 과정을 시차분포모형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Jorgenson의 모형은 1960년대의 거시적인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

14) Eisner(1969, 1970), Eisner and Nadiri(1968), Chirinko and Eisner(1983) 등 참조.

적인 투자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Chirinko and Eisner(1983) 등이 비판한 것처럼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투자는 산출량의 시차변수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이자율이나 조세변수 등의 추가적인 설명력은 대체로 미미했다.

q모형을 이용한 비슷한 실증적 연구들이 198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으나 추정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¹⁵⁾ 추정된 q의 계수가 매우 낮은 값이 나오는데 그것은 투자유인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q이론 접근을 시계열자료에 적용한 연구들은 Jorgenson 모형과 마찬가지로 가속도이론과 비교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신고전파적 접근이 실증분석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등차방정식 문제 때문에 구조변수의 계수가 식별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보통 도구변수를 이용해 해결될 수 있는데 투자함수 추정에서는 이 방법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폭적인 세계개혁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비용이나 조세효과가 반영된 q값 등에 외생적인 횡단면적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 Auerbach and Hassett(1991),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6)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주요 세계개혁이 있을 당시의 조세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사용함으로써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6)는 조세변수들이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상당히 뒷받침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모형의 실증 분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q나 자본비용의 측정에 있어서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추정계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둘째로 조정비용의 정식화가

15) Summers(1981) 외에 중요한 연구로 Salinger and Summers(1983), Fazzari, Hubbard and Peterson(1988) 등을 들 수 있다.

잘못되었을 가능성, 셋째로 자본스톡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형태의 이질성이 중요한 왜곡요인이 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Gilchrist and Himmelberg(1995, 1998), Caballero, Engel and Haltiwagner(1995), 그리고 Goolsbee(2000, 2004) 등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졌다.

조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의 실증결과가 후기의 실증결과와 서로 차이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하는 자료의 상이성으로 일부 해석할 수 있겠다. 투자연구의 초기에는 두 가지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주로 시계열자료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는 조세정책의 내생성 문제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투자이론에서는 조세정책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실제현실에서는 조세정책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경우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투자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 경우 조세정책은 거꾸로 기업의 투자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생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서는 외생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접근함에 따라 실증분석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여 주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기업별 미시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기업별로 조세정책에 의해 다르게 영향을 받는 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 시계열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투자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자료는 적절하지 않고, 기업별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이론에 충실한 실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 이후부터의 실증연구는 주로 기업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들은 대체로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6)은 Summers(1981)가 사용한

조세조정 Q에서 개인소득세인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모형을 이용해 국제간 실증비교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14개국의 기업별 1982년부터 199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사용해 분석했다.

조세정책의 투자효과를 나타내는 조세조정 Q의 독립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모든 국가들에서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9 > 조세조정 Q의 국가별 추정치의 비교

국가명	추정치	표준오차
호 주	0.050	0.019
벨 기 에	0.103	0.044
캐 나 다	0.041	0.009
덴 마 크	0.104	0.085
프 랑 스	0.085	0.042
독 일	0.095	0.040
이탈리아	0.051	0.018
일 본	0.029	0.008
네덜란드	0.069	0.044
노르웨이	0.069	0.031
스 페 인	0.044	0.028
스 웨 덴	0.051	0.047
영 국	0.062	0.013
미 국	0.048	0.006

자료: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6)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결과에 대해서 초기에는 공통적인 견해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별로 많은 실증결과가 나오게 되고, 점차로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자들 사이에 많은 찬반이 있었지만, 대체로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실증결과를 토대로 경제학자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Devereux and Schiantarelli(1990)는 영국의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현금흐름과 재무적인 요인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투자에 미치는 현금흐름의 영향이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났고, 규모가 같은 경우는 상장기간이 짧은 기업일수록 투자에 대한 현금흐름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Fazzari et al.(1998)은 기업이 직면한 비대칭정보의 정도는 기업의 배당성향에 의존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들은 외부자금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내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지출은 유동성 제약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 투자가 현금흐름의 변동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즉 비대칭정보와 자본시장에 불완전성이 존재한다면 현금흐름과 같은 자본조달상의 제약이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외부자금시장에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한, 기존 투자안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평균세율 역시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

곽태원(1985)¹⁶⁾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투자

16) 곽태원,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한국개발연구원, 1985

유인효과를 법인기업의 유효 한계세율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유인체계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세법상의 감가상각제도와 주요 투자유인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적 측면에서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투자유인제도 자체가 지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수정 개편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산업지원 정책적인 성격이 뚜렷한 투자유인제도에만 국한해서 분석한 결과, 과거 우리나라 조세유인정책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의 수출지원정책과 1970년대 후반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지원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준영(1991)¹⁷⁾은 자본코스트와 법인실효세율을 측정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자본소득세와 각종 투자유인제도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간 실효세율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였으며, 중화학공업의 실효세율은 특별조치에 의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제상 투자유인제도 중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자본코스트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 투자세액공제제도, 특별감가상각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코스트 및 법인실효세율의 산업별·자산별 시계열분석 결과와 시물레이션별 차이는 심한 기복을 보여 왔는데, 이는 세법상 투자유인제도의 변동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는 해당산업의 투자내용에 구분없이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를 직접 감면했으므로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을 크게 낮추어 산업간 격차가 더 커지게 한 주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실시 기간 동안 해당산업 내 건물 및 구축물자산의 자본코스트를 기계·설비나 운수장비자산의 자본코스트 보다 더 크게 떨어뜨렸다. 그 결과 이 제도는 기업이 기계·설비투자보다는 건물투자를 투자비용 면

17) 김준영, 「한국의 자본코스트와 법인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정책자료연구』, pp.91-32, 한국개발연구원, 1991. 9.

에서 선호하도록 유인한 요인으로도 작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별감가상각제도나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 효과 면에서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작게 나타났지만, 기계·설비투자에 한해 적용되었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규모가 큰 중화학공업에서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투자세액공제의 효과가 보다 크고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유인제도 하에서 감가상각제도만 경제적 의미의 감가상각제도로 대체한 결과,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에의 효과는 산업 전반에 균등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산별로는 기계·설비자산의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계·설비투자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이 다른 자산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볼 때, 그 동안 우리의 산업정책은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자원배분상 왜곡과 산업간 격차를 가져왔고, 동일산업 내에서도 자산별로 상이한 효과를 미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설비보다는 건물 및 토지에로의 투자를 유인시킨 결과를 초래한 면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조세특례와 맞물려 오히려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왜곡된 효과는 많이 사라져서 산업간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실상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지원산업과 비지원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부문별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부문간 격차를 좁히고 생산에 있어서의 설비·투자를 제고시킬 수 있는 세법상 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경제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윤희·현진권(2000년)¹⁸⁾의 연구에서는 1960년부터 1998년까지 39년 동안 한국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형태별, 재원조달별, 투자자산 종류별 한계유효세율의 비교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법인형태별, 재원조달별, 투자자산종류별 세 부담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 기계 및 장비자산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형태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 조세지원정책의 차별적 정책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줄어드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¹⁹⁾은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법인세부담은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대상이 되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계 유효세 부담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감가상각제도 등 다른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주변 경쟁국들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명목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하여 2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세 부담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18) 원윤희·현진권, 「한국의 유효한계세율: 1960~1998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6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0.

19) 김진수·박형수·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적인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의 개편은 재정정책의 변화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충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수행할 때는 그 시기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세 이외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기대수익률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존 투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인한 세수감소만을 초래할 뿐이다.

곽태원(1984년)²⁰⁾은 우리나라 기업세제상의 투자유인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 조세유인정책과 보조금정책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의 투자모형은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분석체계가 중·장기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한 것이므로 현실적인 경제구조와 신고전파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경제구조와의 괴리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분석체계의 큰 틀로 CGE모형 체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수 추정상의 문제 등 이 모형의 실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분석체계의 유용성을 더해 준다. 정책의 일반균형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모형의 구조가 매우 유연해서 여러 가지 가정이

20) 곽태원, 「우리나라 세제상의 투자유인과 그 경제적 효과」, 최광(편), 『한국세제의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4.

나 정책의 변경을 쉽게 모형에 도입할 수 있다.

셋째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안정적이며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여러 가지 정책결론들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

전영준(2003년)²¹⁾은 다소득계층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경제성장 및 소득계층 간·세대 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조세지원을 통하여 자본비용을 하락시켜 신규투자를 상당 수준 지원하고 있어, 법인세의 폐지가 투자 및 국민소득의 대폭적인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법인세의 폐지는 기존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유발하여 이들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현재 세대와 생애주기 동기에 의한 저축의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준영(1996년)²²⁾은 지난 6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자본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과 투자의 실증분석모형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모형은 신고전학과 투자이론과 q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평균 q 대신 이윤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한계이윤과 자본비용으로부터 추계된 한계 q 를 가지고 투자행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산업별로 추계된 한계 q 는 산업별, 시계열로 폭넓은 분포를 보임으로써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장과정에서 한계 q 의 값이 1을 밑도는 시기와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해왔다는 사실은 한계 q 와 자본축적사이에 얼핏 모순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 내지 자본축적면에서 대부분의 산업이 낮은 한계이

21) 전영준, 「GC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한국은행 『경제분석』 제9권 2호, 2003.

22) 김준영, 「자본비용과 투자의 Q모형」, 『재정논집』 제10집, 한국재정학회, 1996.

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하여 자본형성측면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이루지 못한 반면, 성장과정동안 실시되어온 통제된 임금하의 저임금비용에 의하여 높은 자본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윤건영(1988년)²³⁾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법인이 기업이 투자에 대하여 음(-)의 유효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를 포함할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은 음(-)의 값을 가지거나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도 한계세부담은 매우 낮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극히 타인자본 의존적인 기업의 재무구조와 이자의 손금산입, 가속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증자소득공제 등 법인세의 각종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는 투자에 대한 자본소득세의 유효세율을 낮아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와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기업의 부채와 자기자본은 다같이 기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claim)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수익은 법인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되며 타인자본의 수익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 위주로 이루어지는 기업회계방식에 준거를 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극히 타인자본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의 금융위험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인자본 의존적인 재무구조와 이자의 비용산입은 기업과세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가속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투자준비금, 증자소득공제 등의 제도와 결합할 경우 자본소득세 제도가 투자에 대한 보조금제도로 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

23) 윤건영, 「자본소득세 정책의 투자유인효과분석」, 『재정논집』 제2집, 한국재정학회, 1988.

해야 할 것은 현행 자본소득세 정책이 기업이 재무구조와 개인의 자산 구성에 대하여 중립적이 아니란 점이다. 그러므로 자본소득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기업재무구조와 가계의 자산구성에 대한 중립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종석(1997년)²⁴⁾은 법인세체계의 투자유인 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첫째, 기업이 선호하는 한계적 투자의 자금원은 무엇인가?

둘째, 기업의 재무구조를 결정하는 조세외적인 요인들은 무엇이며, 조세가 이러한 조세외적인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셋째, 한계투자자가 외국인인가 내국인인가?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넷째, 회계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배당에 대한 제한은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대답은 학자들마다 다르며 그에 따라 법인세의 귀착 및 투자유인 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귀착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은 가속도모형 및 신고전학과 투자이론에 입각한 장기 설비투자 식을 오차수정모형으로 국내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설비투자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함수와 같은 단일 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1980-2002년까지 국민계정상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법인세율은 명목법인세율과 평균 유효세율, 내부유보 또는 주식 발행 시 한계유효세율 차입 시 한계유효세율 등 4가지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실질 GDP에 대해서는 정(+), 실질환율 및 실질금리에 대해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법인세 부

24) 안종석, 「법인세에 대한 개념의 변화」,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7.

담을 포함한 장기설비투자식의 추정결과는 법인세율, 한계세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원선·유성용·김진환(2003)은 1994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자본비용이 기업의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법인세율과 기업의 자본투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자본비용도 자본투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자본투자의 결정에 자본비용보다는 법인세율이 중요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법인세율보다는 자본비용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자본조달의 용이함에 따라 두 변수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정지출확대 정책과 감세정책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의 역할을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감세정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세로 인해 기업의 가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러한 가치분소득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때 그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두 정책 간 찬반양론의 핵심인 감세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기업의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조세혜택과 기업의 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일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 역시 조세혜택과 기업의 투자간 내생성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OLS분석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와 조세혜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의 크기가 내생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진정한 효과를 살펴보기가 힘들어진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투자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모형과 조세혜택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을 동시에 추정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기업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하게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기업의 투자

기업의 투자는 연구자 또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Kinney and Trezevant(1993)는 기계, 설비, 비품의 변동을 기업의 투자활동이라고 보고 측정하였다. 기계, 설비, 비품의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증감액에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것이며, 총자산액으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Kern(1994)은 기업투자의 측정에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고정자산과 연구개발비의 변동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Lev and Sougiannis(1996)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자본화가 미래이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비를 함께 기업의 투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현숙(2004), 박기백·정재호(2003) 등은 기업의 투자를 계산하기 위해 현금흐름표상의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의 순증가를 합하여 순 투자로 계산하였다²⁵⁾. 총투자를 이렇게 계산된 순 투자와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ern(1994), Lev and Sougiannis(1996), 김현숙(2004), 박기백·정재호(2003) 등의 연구를 인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INV = (\text{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증감액} + \text{감가상각비} + \text{당기 총 연구개발비}^{26)}) / \text{총자산}$$

가. 기업투자의 외생변수

① 기업규모(SIZE) : 규모가 큰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에 비해 자본

25)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계산하는 경우, 현금흐름표상의 토지의 순증가도 포함하나 설비투자의 개념에 보다 부합하며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지출은 순투자에서 배제하였다(김현숙 2004).

26) 당기 총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에 보고된 개발비 기말 금액 - 개발비 기초금액 +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기중 개발비 상각액 +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경상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에 보고된 경상개발비(권순창 2006).

조달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담보능력이나 협상능력이 소규모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조달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오원선·유성용·김진환 2003). 이는 곧 기업의 투자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규모의 대응치로 총자산의 자연대수 값을 사용하였다.

② 부채비율(DEBT) : 기업의 투자를 위해 조달되는 자금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희소자원의 최적 배분이 필요한데 이는 기업의 재무건전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기업의 재무구조는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오원선·유성용·김진환(2003)의 연구에서 기업의 투자와 부채비율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을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③ 세전수익률(PTROE) :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투자를 위한 내·외부 자금조달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은 기회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들 수 있다.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투자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익률을 외생변수로 사용하고 자기자본대비 세전순이익을 대응치로 사용하였다.

④ 현금흐름(CFO) : 외부조달자본에 대한 제약과 마찬가지로 논리로 내부조달자본 역시 기업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즉 원활한 현금흐름은 투자기회의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Fazzari et al.(1998)은 비대칭정보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한다면 현금흐름과 같은 자본조달상의 제약이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Gilchrist and Himmelberg(1995), Black

et al.(2000)도 현금흐름이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의 대응치로 사용하였다.

⑤ 자본비용(FINC) : 오원선·유성용·김진환(2003)은 기업의 자본비용과 투자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본비용이 높으면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투자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자본비용은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오원선·유성용·김진환(2003)의 연구에서 정의한 자본비용, 즉 기업의 이자비용을 고정부채로 나누어 측정한 타인자본비용을 자본비용의 대응치로 사용하였다.

⑥ 투자계획(BFINV) : 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기업의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김연용·신건권 2004). 기업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박종국·백태영 2006). 김덕영과 이영식(1993)은 연구개발투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와 유의한 변수는 과거년도(1년에서 3년)의 연구개발지출로 나타났고, 특히 1년 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자계획의 대응치로 직전년도의 투자액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조세부담

현재 조세부담의 측정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유효법인세율이다. 유효법인세율(ETR)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와 조세부담능력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TR = \frac{\text{법인세}}{\text{조세부담능력}}$$

지금까지 유효세율은 조세정책 수립과 세법개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Omer et al. 1991), 기업 활동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에 관한 정보 및 조세부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서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회계연구자에게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Zimmerman 1983; Porcano 1986; Kern and Morris 1992).

그러나 유효세율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세부담의 측정치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째, 대리변수의 불완전성을 들고 있다. 유효세율은 일반적인 납부세액을 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되나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리 계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능적 이상 현상을 들고 있다. 유효세율이 기업별 조세혜택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명시적 세율과 묵시적 세율을 포함한 총 부담세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능력은 재무회계 상 세전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문제, 재무회계상 이월결손금의 존재 문제, 기업의 조세보조금과 세전이익간의 함수관계, 암묵적 조세의 미반영 등과 같은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Wilkie and Limberg 1993).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Wilkie and Limberg(1993)는 유효세율 대신 다음과 같이 조세혜택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인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TSE)을 제안하였다.

$$TSE = \frac{(t \cdot PTI - CTE)}{SE} = \frac{TS}{SE}$$

PTI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CTE : 당기의 재무회계상 법인세

SE : 자기자본

TS : 세제상 보조금

유효법인세율이 이익 1원당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반면에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 1원 당 조세혜택을 측정한다. 즉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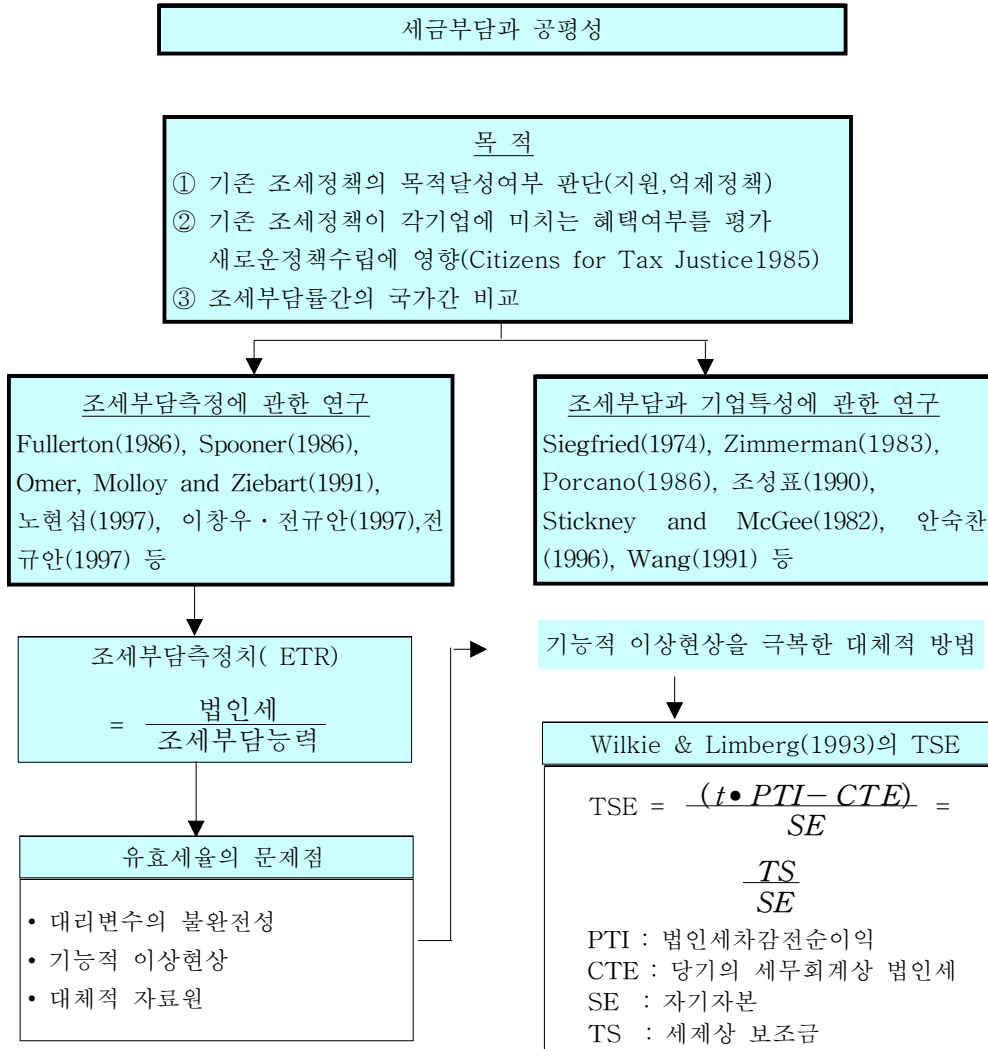
효세율이 높은 기업은 세제보조금 대 자기자본비율이 낮게 계산된다. 유효법인세율은 어느 정도 조세를 부담하는가를 측정한다면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이 어느 정도 조세혜택을 받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유효법인세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조세부담 대응치로 Wilkie and Limberg(1993)의 방법에 따라 조세혜택을 측정하고 이를 세전혜택으로 환산 후 자기자본으로 표준화한 측정치를 사용한다.

$$\begin{aligned} \text{조세혜택의 측정치(PTTSE)} &= \frac{(PTI \cdot tr - TAX)}{SE(1-tr)} \\ &= \frac{(PTI \cdot tr)}{SE(1-tr)} - \frac{TAX}{SE(1-tr)} \end{aligned}$$

여기서, PTI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tr은 한계법인세율, TAX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그리고 SE는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이상의 조세부담 측정치와 관련한 연구흐름을 개관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조세부담과 조세부담측정치 연구의 흐름



가. 조세부담의 외생변수

① 기업규모(SIZE) :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전문가의 활용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Porcano 1986: 조성표 1990). 또한 Grubert and Slemrod (1996)는 납세자행동의 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많은 수익과 자본투자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낮은 비용으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게 Mills et al.(1998)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모가 큰 기업들은 조세전략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밝혔다.

② 수출비용(EXPORT), 자본집약도(FIXC)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제한특례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²⁷⁾. 즉, 수출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국제거래비중이 더 커지고 그 결과로 각종 조세혜택을 누림으로써 조세부담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많고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높아 조세부담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전규안 1997).

③ 부채비용(DEBT) : 부채비용이 높을수록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높을 수 있다(전규안 1997). 특히 신승묘(2005)는 부채비용과 조세부담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SL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연구에 비해 덜 유의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하였으나, 높은 부채비용이 높은 조세부담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④ 투자수준(INV) : 우리나라의 세법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즉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 9조),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

27) 국제자본거래와 관련한 조세특례제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한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등의 규정이 있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 2, 26조, 28조, 29조 등이 있다.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등이다. 결국 이는 투자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절감액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신승묘 2005).

3.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산출을 결정하는 투자와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조세혜택을 회귀연립방정식(SEM)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INV_{it} = \alpha_0 + \alpha_1 SIZE_{it} + \alpha_2 DEBT_{it} + \alpha_3 PTROE_{it} + \alpha_4 PTTSE_{it} + \alpha_5 CFO_{it} + \alpha_6 FINC_{it} + \alpha_7 BFINV_{it-1} + \mu_{it} \quad (1)$$

여기서, INV :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 + 감가상각비 + 당기 총 연구개발비) / 총자산

PTTSE : 조세혜택

SIZE : 총자산의 자연대수 값

DEBT :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

PTROE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자기자본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FINC : 이자비용/고정부채

BFINV : 직전연도의 투자액

$$PTTSE_{it} = \beta_0 + \beta_1 SIZE_{it} + \beta_2 EXPORT_{it} + \beta_3 DEBT_{it} + \beta_4 FIXC_{it} + \beta_5 INV_{it} + \epsilon_{it} \quad (2)$$

여기서, EXPORT : 수출액/매출액

FIXC : (유형고정자산 - 토지 - 건설 중인 자산) / 총자산

INV :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 + 감가상각비 + 당기 총 연구개발비) / 총자산

나머지는 회귀식(1)의 변수정의와 동일함

4. 변수간의 내생성 문제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를 이행하기 전에 준비금을 전입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유보하는 기간의 이익을 주는 제도로서 조세지원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① 사업용 자산, 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③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해주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조세지원과 관계없이 해당설비의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투자로 인해 사후적으로 조세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둘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실증하기 위하여 단일등식(single equation) 분석모형 뿐만 아니라 연립등식(simultaneous equations) 분석모형도 사용한다.

단일등식 분석모형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은 독립변수가 외생적(exogenous)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가 독립변수(X)로부터 종속변수(Y)로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Y로부터 X로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유지되지 않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내생적(endogenous)인 경우가 있다. 즉, X가 Y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Y가 X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일등식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연립등식 분석모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연립등식분석모형의 계수를 계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분석방법은 모형이 'just identified,' 'overidentified' 혹은 'underidentified'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Gujarati(1995)는 모형이 overidentified 되어 있는 경우 2-stage least squares(2-SLS) 분석방법이 유용함을 제시하고 있다²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이 overidentified 되어 있기 때문에 Gujarati의 2-SLS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Stage 1

등식 (3)에서 PTTSE와 오차값(μ_{it})과의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하여 등식 (3)과 (4)의 모든 외생적 변수로 PTTSE를 회귀한다.

$$PTTSE_{it} = \widehat{\Pi}_0 + \widehat{\Pi}_1 SIZE_{it} + \widehat{\Pi}_2 DEBT_{it} + \widehat{\Pi}_3 PTROE_{it} + \widehat{\Pi}_4 CFO_{it} + \widehat{\Pi}_5 FINC_{it} + \widehat{\Pi}_6 BFINV_{it-1} + \widehat{\Pi}_7 EXP OR_{it} + \widehat{\Pi}_8 FIXC_{it} + \widehat{\mu}_{it} \quad (3)$$

등식 (3)으로부터 등식 (4)를 얻을 수 있다.

$$PT\widehat{TSE}_{it} = \widehat{\Pi}_0 + \widehat{\Pi}_1 SIZE_{it} + \widehat{\Pi}_2 DEBT_{it} + \widehat{\Pi}_3 PTROE_{it} + \widehat{\Pi}_4 CFO_{it} + \widehat{\Pi}_5 FINC_{it} + \widehat{\Pi}_6 BFINV_{it-1} + \widehat{\Pi}_7 EXP OR_{it} + \widehat{\Pi}_8 FIXC_{it} \quad (4)$$

28) M 개의 등식을 가지고 있는 모형의 경우, 모형의 identification 상태는 다음과 같다.

K - k > m - 1, overidentified;

K - k = m - 1 exactly identified;

K - k < m - 1 underidentified.

K는 모형전체의 exogenous 변수의 수; k는 개개 등식의 exogenous 변수의 수; m은 endogenous 변수의 수.

등식 (3)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TTSE_{it} = PT\widehat{TSE}_{it} + \widehat{\mu}_{it} \quad (5)$$

등식 (5)는 추계적(stochastic) PTTSE가 두 요인($PT\widehat{TSE}_{it}$ 와 $\widehat{\mu}_{it}$)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PT\widehat{TSE}_{it}$ 는 미리 결정된 변수들(SIZE, DEBT, PTROE, CFO, FINC, BFINV, EXPORT, FIXC)의 선형 조합이고 $\widehat{\mu}_{it}$ 는 무작위 오차이므로 OLS 이론에 따르면 $PT\widehat{TSE}_{it}$ 와 $\widehat{\mu}_{it}$ 는 서로 상호 관련이 없게 된다.

Stage 2

등식 (1)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될 수 있다.

$$\begin{aligned} INV_{it} &= \alpha_0 + \alpha_1 SIZE_{it} + \alpha_2 DEBT_{it} + \alpha_3 PTROE_{it} + \alpha_4 (PT\widehat{TSE}_{it} + \widehat{\mu}_{it}) + \alpha_5 CFO_{it} \\ &\quad + \alpha_6 FINC_{it} + \alpha_7 BFINV_{it-1} + \mu_{it} \\ &= \alpha_0 + \alpha_1 SIZE_{it} + \alpha_2 DEBT_{it} + \alpha_3 PTROE_{it} + \alpha_4 PT\widehat{TSE}_{it} + \alpha_5 CFO_{it} + \alpha_6 FINC_{it} \\ &\quad + \alpha_7 BFINV_{it-1} + (\mu_{it} + \alpha_4 \widehat{\mu}_{it}) \\ &= \alpha_0 + \alpha_1 SIZE_{it} + \alpha_2 DEBT_{it} + \alpha_3 PTROE_{it} + \alpha_4 PT\widehat{TSE}_{it} + \alpha_5 CFO_{it} + \alpha_6 FINC_{it} \\ &\quad + \alpha_7 BFINV_{it-1} + \bar{\mu}_{it} \end{aligned} \quad (6)$$

여기에서, $\bar{\mu}_{it} = \mu_{it} + \alpha_4 \widehat{\mu}_{it}$

등식 (1)에서 PTTSE는 오차값인 μ_{it} 와 상관관계가 있어서 OLS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식 (6)에서 $PT\widehat{TSE}_{it}$ 는 오차값인 $\bar{\mu}_{it}$ 과 표본이 많아지면서 상호 관련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오차값인 $\bar{\mu}_{it}$

는 $\widehat{\mu}_{it}$ 를 포함하고 있는데 $\widehat{\mu}_{it}$ 은 $PTTSE_{it}$ 와 상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OLS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2-SLS 분석은 내생적 독립변수와 오차값의 상관관계 때문에 OLS 분석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내생적 독립변수(PTTSE)를 대신할 수 있는 instrument 변수($PTTSE_{it}$)를 만들어서 OLS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instrument 변수의 타당성이 분석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계산된 instrument 변수는 내생적 독립변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오차값(μ_{it})과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5. 표본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각 연도 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기업에 한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관리대상 기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금융과 보험업 및 건설업은 제외하였다. 표본기간 중 재무제표 자료가 입수 가능한 기업으로 하였으며, 재무제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FAS와 한국상장사협의회(주)의 TS-2000웨어하우스에서 입수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재무자료의 입수기간(2001- 2005년) 동안 관리대상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2)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 (3) 금융업과 보험업, 건설업 이외의 산업에 속한 기업
- (4) 분석기간 중 과세소득자료 이용이 가능한 기업

(1)은 관리대상기업에 속한 기업은 그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재무자료의 왜곡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주식의 거래가 매우 부진하여 주가의 적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는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한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연구결과가 왜곡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3)은 은행, 단기금융, 증권, 보험 등의 금융업에 속한 기업들은 그 영업상의 특징 및 재무제표 구성항목이 일반기업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함으로써 분석대상기업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선정절차에 의하여 분석대상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²⁹⁾은 다음의 <표 20>과 같다.

29)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라 분류하였고, 제조업을 다시 Low-Tech산업과 High-Tech산업으로 분류하였다(Amir and Lev 1996; 한봉희 1998). 연구개발, 인적개발, 브랜드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High-Tech중심의 기업들 간에는 조세혜택에 따른 기업투자행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봉희(199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구분하였다.

< 표 20 > 산업별·연도별 선정 표본

산업별 \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o A산업 도소매업 / 운수업	6	6	6	6	6	30
o B산업(Low-Tech) 음식료품 /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 가죽, 가방 및 신발 / 목재 및 나무제품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비금속광물제품 / 제1차금속산업 / 가구 및 기타제품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31	131	131	131	131	655
o C산업(High-Tech)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원료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 기타기계 및 장비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기타 운송장비.	187	187	187	187	187	935
계	324	324	324	324	324	1620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1>에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이 요약되어 있다.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사분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변수에는 극단치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양쪽 끝 3%값에서 “Winsorize”시키는 방법으로 극단치를 처리하였다³⁰⁾.

30) 극단치를 처리하는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Truncation기법과 Winsorization기법이 있다. ± 1 Truncation기법은 양쪽 끝 ± 1 값에서 절단하는 기법이며, ± 1 , $\pm 1\%$, $\pm 3\sigma$ 에서 Winsorization하는 기법은 각각 변수의 양쪽 끝 ± 1 , $\pm 1\%$ 및 평균에서 $\pm 3\sigma$ 값에서 조정하는 기법이다. 기본적으로 이 두 기법의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표본의 축소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Winsorization기법이 우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Kennedy et al. 1992).

< 표 21 >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Variable	평균	표준편차	Q1	Q3
INV	0.0001	0.0721	-0.0169	-0.0188
SIZE	19.2476	1.4414	18.2704	19.9933
DEBT	5.9758	7.8715	2.2835	6.7059
PTROE	0.8478	2.6735	0.0838	1.1321
FINC	0.2249	0.5341	0.0653	0.2241
BFINV	0.0037	0.0756	-0.0159	0.0229
PTTSE	-0.0582	0.5398	-0.0773	0.0286
EXPORT	0.3237	0.3020	0.0289	0.5545
FIXC	0.2280	0.1346	0.1308	0.2993
CFO	0.1718	0.5021	0.0026	0.2076

변수의 정의 : INV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감가상각비+당기총연구개발비)/총자산, SIZE는 규모(자산총액의 자연대수 값), DEBT은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총액), PTROE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자기자본, FINC은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BFINV는 직전연도의 투자액(INV), PTTSE는(법인세차감전순이익×한계법인세율-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자기자본(1-한계법인세율), EXPORT는 수출액/매출액, FIXC는 수출액/매출액, CFO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다.

종속변수로 기업의 투자를 나타내는 INV는 평균이 0.0001로 기업들의 투자액은 매년 일정함을 보인다. 독립변수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조세혜택은 -0.0582이며, 이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에 포함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은 아래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 표 22 >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변수	INV	SIZE	DEBT	PTROE	FINC	BFINV	PTTSE	EXPORT	FIXC
SIZE	.027								
DEBT	.041	.297a							
PTROE	.338a	.194a	.296a						
FINC	-.036	-.100	.037	.081a					
BFINV	.149a	.009	.118a	.016	-.036				
PTTSE	.426a	.034	-.216a	.317a	-.051b	-.073a			
EXPORT	-.079a	.165a	-.009	-.085a	-.032	-.043	.034		
FIXC	-.039	.271a	.062a	-.099a	-.038	.038	-.004	-.015	
CFO	.040a	.331a	.047	.101a	-.031	.040	.050b	.082a	.076a

변수의 정의 : **INV**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감가상각비+당기총연구개발비)/총자산, **SIZE**는 규모(자산총액의 자연대수 값), **DEBT**은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총액), **PTROE**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자기자본, **FINC**은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BFINV**는 직전연도의 투자액(INV), **PTTSE**는(법인세차감전순이익×한계법인세율-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자기자본(1-한계법인세율), **EXPORT**는 수출액/매출액, **FIXC**는 수출액/매출액, **CFO**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다.

분석결과에서 기업의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양(+)¹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조세혜택이 기업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업의 투자와 수익률 간에도 유의한 양(+)²의 관계를 보였으며, 투자와 당좌비율 간에는 음(-)³의 관계를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전년도 투자와의 관계는 유의한 양(+)⁴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직전년도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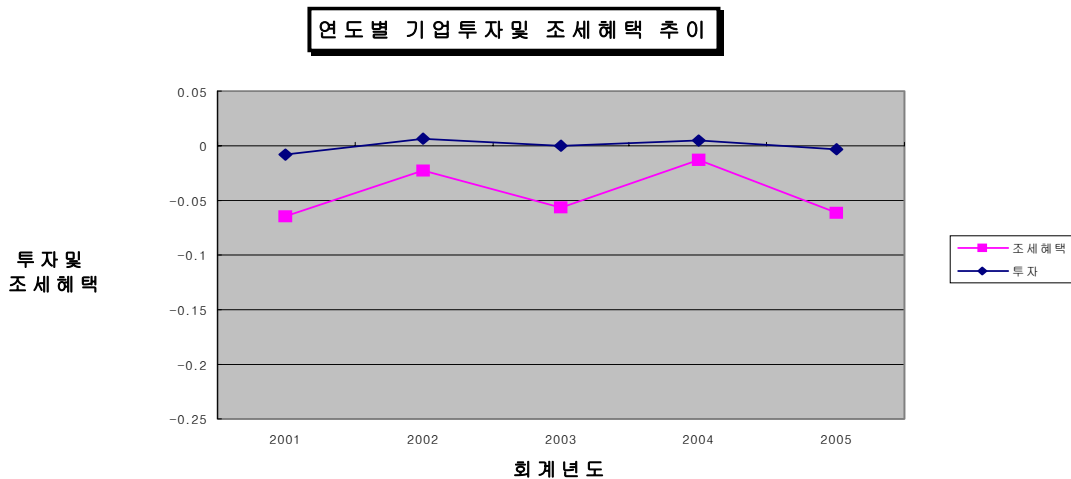
흐름과도 유의한 양(+)¹⁾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기업의 투자에 현금흐름이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기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더라도 다중공선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기업투자 및 조세혜택 추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분석에 앞서 연도별 투자와 조세혜택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추이는 기업의 투자와 조세혜택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연도별로 기업의 투자 및 조세혜택추이를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은 표본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및 조세혜택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5> 연도별 기업투자 및 조세혜택 추이



표본기업의 투자는 2001년을 기준으로 2002년 증가하였다가 다시 2003년 약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혜택 역시 그 변동 폭은 기업의 투자보다 큰 폭을 보이지만 추이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상관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기업의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양(+)
의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기업투자와 조세혜택 사이의 OLS분석

<표 23>는 조세혜택을 포함한 재무요인들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표 23 > 기업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OLS분석

$$INV_{it} = \alpha_0 + \alpha_1 SIZE_{it} + \alpha_2 DEBT_{it} + \alpha_3 PTROE_{it} + \alpha_4 PTTSE_{it} + \alpha_5 CFO_{it} + \alpha_6 FINC_{it} + \alpha_7 BFINV_{it-1} + \mu_{it} \quad (1)$$

Variables		INV		
	예측부호	추정계수	p-value	
Intercept	?	0.0446	0.052	
SIZE	-	-0.0026	0.034	
DEBT	+	0.0005	0.017	
PTROE	+	0.0056	0.000	
PTTSE	+	0.0514	0.000	
CFO	+	-0.0001	0.802	
FINC	+	-0.0047	0.108	
BFINV	+	0.1580	0.000	
Adjusted R ²		0.258		
F-statistic		81.573(0.000)		
N		1620		

변수의 정의 : INV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감가상각비+당기총연구개발비)/총
자산, PTTSE는 조세혜택, SIZE는 총자산의 자연대수값, DEBT는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
PTROE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자기자본, CFO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FINC는
이자비용/고정부채, BFINV는 직전연도의 투자액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하는 조세혜택과 기업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0.0514로 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오원선·유성용·김진환(2003), 고종권(2004), 신현걸(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밖에 기업규모와 기업의 투자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투자에 소극적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권순창·김형국·이태정 2006).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투자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권순창·김형국·이태정(2006)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음(-)의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그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업규모는 총자산의 자연대수 값으로 측정하였고 기업투자는 투자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변수이므로 자산대비 투자액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는 한 기업투자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작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한 변수의 정의상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채비율과 기업의 수익률은 기업의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채비율과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에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부채를 조달하여 투자를 극대화하고 이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져서 기업의 투자와 부채비율 및 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전 투자액과 기업의 투자 간의 관계, 즉 기업의 투자계획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BFINV의 계수값은 0.1580으로 아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 장기적인 투자계획 하에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기업의 투자는 부채비율, 수익률, 조세혜택, 투자계획에 양(+)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가 커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24>는 조세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투자변수를 포함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 표 24 > 조세혜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OLS분석

$$PTTSE_{it} = \beta_0 + \beta_1 SIZE_{it} + \beta_2 EXPORT_{it} + \beta_3 DEBT_{it} + \beta_4 FIXC_{it} + \beta_5 INV_{it} + \varepsilon_{it} \quad (2)$$

Variables	PTTSE		
	예측부호	추정계수	p-value
Intercept	?	-0.6349	0.000
SIZE	+	0.0337	0.000
EXPORT	+	0.0920	0.020
DEBT	-	-0.0179	0.000
FIXC	-	0.0241	0.789
INV	+	3.2852	0.000
Adjusted R ²		0.246	
F-statistic		106.471(0.000)	
N		1620	

변수의 정의 : EXPORT는 수출액/매출액, FIXC는 (유형고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총자산, INV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감가상각비+당기총연구개발비)/총자산, 나머지는 회귀식(1)의 변수정의와 동일하다.

<표 24>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투자가 클수록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5. 기업투자와 조세혜택 사이의 2-SLS분석

<표 23>과 <표 24>에 나타나 있는 OLS분석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와 조세혜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의 크기가 내생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진정한 효과를 살펴보기가 힘들어진다. 이를 감안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을 통해 기업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모형과 조세혜택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을 동시에 추정하였으며, 아래 <표 25>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 표 25 > 기업투자와 조세혜택 사이의 2-SLS분석

$$INV_{it} = \alpha_0 + \alpha_1 SIZE_{it} + \alpha_2 DEBT_{it} + \alpha_3 PTROE_{it} + \alpha_4 PTTSE_{it} + \alpha_5 CFO_{it} + \alpha_6 FINC_{it} + \alpha_7 BFINV_{it-1} + \mu_{it} \quad (6)$$

Variables	INV		
	Predicted Sign	Coefficient Estimate	p-value
Intercept	?	0.0119	0.668
SIZE	-	-0.0070	0.636
DEBT	+	0.0019	0.054
PTROE	+	0.0143	0.000
PTTSE	+	-0.0524	0.198
CFO	+	0.0001	0.624
FINC	+	-0.0119	0.004
BFINV	+	0.1267	0.000
Adjusted R ²		0.1367	
F-statistic		39.40(0.000)	
N		1620	

변수의 정의 : INV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감가상각비+당기총연구개발비)/총자산, PTTSE는 조세혜택, SIZE는 총자산의 자연대수값, DEBT는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 PTROE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자기자본, CFO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FINC는 이자비용/고정부채, BFINV는 직전연도의 투자액이다.

기업의 투자와 조세혜택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양(+)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의 크기는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기업투자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세혜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 OLS분석을 하였을 경우 기업투자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조세혜택에 대한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을 실시하였다.

앞서 단순 OLS분석의 결과에서는 기업투자와 조세혜택 간에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0.0514로써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혜택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의 투자를 독립변수로 하여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24>의 결과에서 보듯이 기업의 투자 역시 조세혜택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조세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표 25>의 결과에 따르면 예상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면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기 보다는 계획된 기업의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동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단순 OLS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전연도의 투자 즉 투자계획과 투자와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기업의 투자는 조세혜택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기업의 전략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조세혜택을 누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결론

재정지출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최근 반대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기회복에 쓴다면 그 효과는 세금 징수전과 같게 되나 감세를 통해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투자로 연결된다면 그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래퍼이론을 불황극복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측면도 존재한다. 결국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정책의 찬반양론에 대한 핵심은 감세정책이 기업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조세부담과 기업의 투자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 OLS로 분석하였다.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자 즉, 기업의 투자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통제된 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법인세 관련 정책수단들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2-SLS로 분석함으로써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OLS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단계 최소자승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기업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면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기 보다는 계획된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을 수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해석하면 감세정책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시사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돌파구로 감세를 역설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감세는 내수 진작 효과는 없고 재정적자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거듭 반박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³¹⁾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결국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첫 단계로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냐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단순 OLS분석에서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조세혜택과 기업의 투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조세부담의 측정치의 불완전성,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누락변

31)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감세론'을 제기한데 이어 감세와 국민연금 등 공적 국민부담금의 축소를 주문했다. 반면에 정부는 "감세정책은 주요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의 문제 등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선부른 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해 세수의 경우 예산대비 4조 3000억원이 부족했고, 올해도 4조 6000억원 가량 예산을 밑돌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금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이렇게 세수감소 추세는 분명한 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감세정책 → 투자 또는 소비증대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선불리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예상된다.

최근 한국은행과 KDI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5%에서 90년대 6.6%, 2000년대 4.8%로 하락세에 있고 경제의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제조업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불명확하고 간접적인 재정확대나 감세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총 공급 능력의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과 연구개발 부분의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관련 규제의 완화(출자총액규제, 수도권총량제 등), 설비투자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및 공장부지 무상 임대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연구개발 관련 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 등 직접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종권,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분석. 회계학 연구, 2004. 제29권 제2호, pp. 1-28.
- 곽태원, 「우리나라 세제상의 투자유인과 그 경제적 효과」, 최광(편), 『한국 세제의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4.
- 곽태원,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한국개발연구원, 1985.
- 곽태원 · 이병기 · 현진권,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권순창 · 김형국 · 이태정, 조세혜택 및 세율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Working Paper*, 2006.
- 김덕영 · 이영식, 한국기업 연구개발투자모형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1993. 제41집 제1호, pp. 51-75.
- 김성태 · 이인실 · 안종범 · 이상돈, Ko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개편의 효과분석, 경제학연구, 2003. 51.
- 김연용 · 신건권, 교육훈련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04. 제46호, pp. 2309-2321.
- 김준영, 「한국의 자본코스트와 법인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정책자료연구』, 1991. 91-32, 한국개발연구원.
- 김준영. 「자본비용과 투자의 Q모형」, 『재정논집』, 한국재정학회, 1996. 제10집.
- 김진수 · 박형수 · 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현숙,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재정포럼, 2004. 8월호, pp. 6-30.
- 노현섭, 상장제조기업의 유효세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997. pp. 101-126.
- 박기백 · 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박기백 · 김진, 법인세부담 연구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종국 · 백태영,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재량적원가의 지출행태와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Working Paper*, 2006.
- 신승묘, 유효법인세율차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조세혜택가설의 불완전성, 회계학연구, 1998. 제23권 제3호, pp. 81-106.
- 신승묘,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사이의 인과관계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 평가, 회계학연구, 2005. 제30권 4호, pp. 77-108.
- 신현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1996. 제8호, pp. 125-152.
- 안종석, 「법인세에 대한 개념의 변화」,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오원선 · 유성용 · 김진환, 법인세율 및 자본비용의 변화가 기업규모별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2003. 제25권 제2호, pp. 75-101.
- 윤건영, 「자본소득세 정책의 투자유인효과분석」, 『재정논집』, 1988. 제2집, 한국재정학회.
- 원윤희 · 현진권, 「한국의 유효한계세율: 1960~1998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2000. 제6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 윤봉한, 기업 투자의 재무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1994. 7,

pp. 57-80.

이준석 · 송준기, 현금흐름과 투자지출 관계의 산업별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004. 제46호, pp. 1943-1959.

이창우 · 전규안, 조세부담측정치로서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영학연구, 1997. 제26권 제4호, pp. 851-874.

조성표, 우리나라기업의 정치적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 명시적 조세와 암묵적 조세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1990. 제10호, pp. 177-205.

전규안,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1997. 제22권 제4호, pp. 23-60.

정규언,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효과의 분석. 세무회계학연구, 1998. 제1권, pp. 37-52.

전영준, 「GC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한국은행 『경제분석』, 2003. 제9권 제2호.

한봉희, 발생주의적 조정의 유용성 저하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1998. 제23권 제4호, pp. 53-79.

Amir, E. and B. Lev. Value-Relevanc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The Wireless Communications Industr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96. 22, pp. 3-30.

Auerbach, Alan J. and K. A. Hassett, "Recent U.S. Investment Behavior and the Tax Reform Act of 1986 : A Disaggregate View",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35, 1991, pp. 185~215.

Black, E.L. and J. Legoria, & K.F. Sellers. Capital Investment Effects of Dividend Imput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00. 122, pp. 40-59.

Caballero, R.J., "Small Sample Bias and Adjustment Cos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6, 1, February, 1994, pp. 52~58.

Caballero, R. J, "Aggregate Investment", Taylor, John B and

- Michael Woodford (eds), *Handbook of Macroeconomics*, North Holland, 1999.
- Chirinko, R. S. and R. Eisner, "Tax Policy in Major Macroeconomics Model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 1983, pp.139~166.
- Clark, J. M., "Business Acceleration and the Law of Demand", *Journal of Economic Theory* 25, 1980, pp.217~235.
- Cummins, J. G., K. A. Hassett and R. G. Hubbard, "A Reconsideration of Investment Behavior Using Tax Reforms as Natural Experimen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4, pp.1~74.
- Cummins, J. G., K. A. Hassett and R.G. Hubbard, "A Reconsideration of Investment Behavior Using Tax Reforms as Natural Experimen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4(2), pp. 1~59.
- Devereux Michael, Rachel Griffith and Alexander Klemm, "Corporate Income Tax : Reforms and Tax Competition," *Economic Policy*, 2002, pp. 451~495.
- Devereux, M. and F. Schiantarelli. *Investment, Financial Factors and Cash Flow : Evidence From U. K. Panel Data. NBER Working Paper*, 1989.
- Eisner, R.,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9, 1969, pp. 379~388.
- Eisner, R., and M.I. Nadiri, "Investment Behavior and Neoclassical Theor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0, 1968, pp. 369~382.
- Fazzari, S.M., G.R. Hubbard, and B.C. Peterson. *Financing Constraints and Corporate Invest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8, pp. 141-195.
- Fisher, I., *The theory of Investment*, Macmillan, 1930.

- Friedman, Joel and Iris Lav "A Permanent Corporate Tax Rate Cut: The Wrong Medicine For Short-Term Economic Ill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September 26, 2001.
- Fullerton, D. Which Effective Tax Rate?. *National Tax Journal*, 1986, pp. 23 - 41.
- Gichrist, S. and C. P. Himmelberg, "Investment Fundamentals and Finance", in Bernake, Ben and Julio J. Rotemberg(ends.), NBER Macroeconomics Annual, MIT Press, 1998, pp.223~262.
- Gilchrist, S. and C.P. Himmelberg. Evidence on the Role of Cash Flow for Invest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5, 36, pp. 541-572.
- Goolsbee, Austan, "Measurement Error and the Cost of Capital", *National Tax Journal* 53, 2000, pp. 215~228.
- Goolsbee, Austan, "Taxes and the Quality of Capita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3-4), 2004, pp. 519~543.
- Goolsbee, Austan, "The Impa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Evidence from State Organizational form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8, 2004, pp. 2283~2299.
- Grubert, H. and J. Slemrod. The Effect of Taxes on Investment and Income Shifting to Puerto Rico. University of Michigan working paper. 1996.
- Jorgenson, Dale 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ur", *American Economics Review* 53(2), 1963, pp. 247~259.
- Kennedy, D., J. Lakonishok, and W. Shaw. Accomodating Outliers and Nonlinearity in Decision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1992. 7, pp. 161-193.
- Kern B. B. The Redistribution of Corporate Plant and Equipment as Result of the Economy Recovery Act of 1981.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94. 13, pp. 225-252.

- Kern, B.B. and Morris, M.H. Taxes and firm size: the effect of tax legislation during the 1980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2. 14, pp. 80 - 96.
- Kinney, M. and R. H. Trezevant. Taxes and the Timing of Corporate Capital Expenditur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3. 15, 40-62.
- Lee, Young and Roger H. Gordon,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03.
- Lev, B. and T. Sougiannis. The capitalization, amortization, and value-relevance of R&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96. 21, pp. 107-138.
- Mills, L., M. Erickson, and E. Maydew. Investments in Tax Planning.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1998.
- Omer, T. C, Molloy, K. H. and Ziebart, D. A.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1991.
- Porcano, T. M. Corporate Tax Rates : Pro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1986, pp. 17 - 31.
- Siegfried, J. J. Effective Average U. S. Corporate Income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1974. June, pp. 245 - 259.
- Spooner. G. M.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s. *National Tax Journal*, 1986. September, pp. 293-306.
- Stickney, C., and V. McGe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82. Vol. 1.

- Wang, S.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s : A Test of Firm's Political Success. *The Accounting Review*, 1991. January, pp. 158 - 169.
- Wilkie, P., Limberg, S. Measuring Explicit Tax (Dis)Advantage for Corporate Taxpayers: An Alternative to Average Effective Tax Rat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 1993. 15, pp. 46-71.
- Zimmerman, J. 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3. 5, pp. 119 - 149.

< 자 료 >

1. IBRD, European Tax Handbook 2003, 2005
2.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4.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4, 2005.